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강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지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」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현행 본 조례의 약물은 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

개정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5호에서 약물을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규정함 (2025.12)에 따라 조례의 약물에 대한 규정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.

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!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